신탁계약서 및 (간이)투자설명서 변경 대비표

칸서스자산운용㈜

1. 투자신탁의 명칭

- 칸서스 뫼비우스 블루칩 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

2. 효력발생일

- 2011. 09. 23

3. 변경사유

-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상향 조정(2 등급→1 등급)
- 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변경
- 집합투자기구의 연혁, 투자운용인력, 투자신탁 재무정보,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, 운용실적, 집합투자업자의 요약재무내용, 운용자산 규모 등 통계자료 갱신
- A1 클래스 수익증권 판매기준 조항의 변경
- 환매수수료조항 자구 수정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조항의 변경

4. 신탁계약서 변경 내용

현 행	변 경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등) ①~②(생략)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수익증권의 종류 및 판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C1 클래스 수익증권 : 적립식 투자자 2. C2 클래스 수익증권 : 납입금액 1,000만원 이상의 임의식·거치식 투자자 또는 해당 판매회사의 적립식펀드 투자경험자 3. A1 클래스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보유자 또는 집합투자기구(신탁업자) ④~⑤(생략)	**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등)** ①~②(현행과같음)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수익증권의 종류 및 판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C1 클래스 수익증권 : 적립식 투자자 2. C2 클래스 수익증권 : 납입금액 1,000만원 이상의 임의식·거치식 투자자 또는 해당 판매회사의 적립식펀드 투자경험자 3. A1 클래스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보유자 또는 집합투자기구(신탁업자), 집합투자업자를 판매회사로 하는 투자자. 이 경우 이 신탁계약에서 "판매회사"는 "집합투자업자"로 본다. ④~⑤(현행과같음)
제41조(환매수수료) ①(생략) 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. 이하 본 항에서 "이익금"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	**제41조(환매수수료)** ①(현행과같음) 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. 이하 본 항에서 "이익금"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

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2.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 ③~④(생략) **제45조(투자신탁의 해지)**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.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.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②~④(생략)	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2.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 ③~④(현행과같음) **제45조(투자신탁의 해지)**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.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.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~④(현행과같음)

5.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<table>
<tr><th>항 목</th><th>정 정 전</th><th>정 정 후</th></tr>
<tr><td>제2부
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5.투자운용인력</td><td>2010.4.23기준</td><td>2011.9.15 기준</td></tr>
<tr><td>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나.종류형 구조</td><td>
<table>
<tr><th rowspan="2">종류별</th><th rowspan="2">가입자격</th><th colspan="2">수수료</th><th rowspan="2">보수</th></tr>
<tr><th>판매</th><th>환매</th></tr>
<tr><td>C1 클래스</td><td>적립식 투자자</td><td>없음</td><td rowspan="2">-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

-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td><td rowspan="2">(생략)</td></tr>
<tr><td>C2 클래스</td><td>납입금액 1,000만원이상의 임의식.거치식 투자자 또는 해당 판매회사의 적</td><td>없음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<table>
<tr><th rowspan="2">종류별</th><th rowspan="2">가입자격</th><th colspan="2">수수료</th><th rowspan="2">보수</th></tr>
<tr><th>판매</th><th>환매</th></tr>
<tr><td>C1 클래스</td><td>적립식 투자자</td><td>없음</td><td rowspan="2">-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

- 30일 이상 90일미만 : 이익금의</td><td rowspan="2">(현행과 동일)</td></tr>
<tr><td>C2 클래스</td><td>납입금액 1,000만원이상의 임의식. 거치식 투자자 또는 해당 판매</td><td>없음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</td>
<td>
<table>
<tr><td></td><td>립식펀드 투자경험자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A1 클래스</td><td>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보유자 또는 집합투자기구(신탁업자)</td><td>선취 0.5%이내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/table>
</td>
<td>
<table>
<tr><td></td><td>회사의 적립식펀드 투자경험자</td><td></td><td>30%</td><td></td></tr>
<tr><td>A1 클래스</td><td>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보유자 또는 집합투자기구(신탁업자)</td><td>선취 0.5%이내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tr>
<td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
다. 기타 투자위험</td>
<td>
<table>
<tr><td>해지위험</td><td>투자신탁 해지위험</td><td>투자신탁이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td></tr>
</table>
</td>
<td>
<table>
<tr><td>해지위험</td><td>투자신탁 해지위험</td><td>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,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tr>
<td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td>
<td>2등급</td>
<td>1등급</td>
</tr>
<tr>
<td>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
가. 매입
(2) 종류별</td>
<td>3. A1 클래스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보유자 또는 집합투자기구(신탁업자)</td>
<td>3. A1 클래스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보유자 또는 집합투자기구(신탁업자), 집합투자업자를 판매회사로 하는 투자자. 이 경우 이 신탁계약에서 “판매회사”는 "집합투자업자"로 봅니다.</td>
</tr>
</table>

가입자격		

13.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
구분	수수료율		
	C1 클래스	C2 클래스	A1 클래스
선취판매 수수료	없음	없음	납입금액의 0.5%이내
후취판매 수수료	없음		
환매수수료	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 선취 0.5%이내		

구분	수수료율		
	C1 클래스	C2 클래스	A1 클래스
선취판매 수수료	없음	없음	납입금액의 0.5%이내
후취판매 수수료	없음		
환매수수료	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30일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 선취 0.5%이내		

13.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
구분	지급비율(연간, %)								
	C1 클래스				C2 클래스				A1 클래스
	2010.5.3~2011.5.2	2011.5.3~2012.5.2	2012.5.3~2013.5.2	2013.5.3~	2010.5.3~2011.5.2	2011.5.3~2012.5.2	2012.5.3~2013.5.2	2013.5.3~	
집합투자업자	연 0.71%								

구분	지급비율(연간, %)								
	C1 클래스				C2 클래스				A1 클래스
	2010.5.3~2011.5.2	2011.5.3~2012.5.2	2012.5.3~2013.5.2	2013.5.3~	2010.5.3~2011.5.2	2011.5.3~2012.5.2	2012.5.3~2013.5.2	2013.5.3~	
집합투자업자	연 0.71%								

	보수										보수									
	판매회사보수	연 1.555%	연 1.370%	연 1.185%	연 1.00%	연 1.480%	연 1.320%	연 1.160%	연 1.00%	없음	판매회사보수	연 1.555%	연 1.370%	연 1.185%	연 1.00%	연 1.480%	연 1.320%	연 1.160%	연 1.00%	없음
	신탁업자보수	연 0.034%									신탁업자보수	연 0.034%								
	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	연 0.016%									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	연 0.016%								
	기타비용	연 0.011%									기타비용	연 0.009%%								
	총 보수·비용	연 2.326%	연 2.141%	연 1.956%	연 1.771%	연 2.251%	연 2.091%	연 1.931%	연 1.771%	연 0.771%	총 보수·비용	연 2.324%	연 2.139%	연 1.954%	연 1.769%	연 2.249%	연 2.089%	연 1.929%	연 1.769%	연 0.769%

<table>
<tr><td></td><td>증권 거래비용</td><td colspan="4">연 0.75%</td><td>증권 거래비용</td><td colspan="4">연1.162%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</td><td>구분</td><td>1년</td><td>3년</td><td>5년</td><td>10년</td><td>구분</td><td>1년</td><td>3년</td><td>5년</td><td>10년</td></tr>
<tr><td>C1 클래스</td><td>256</td><td>808</td><td>1,416</td><td>3,223</td><td>C1 클래스</td><td>218</td><td>688</td><td>1,206</td><td>2,745</td></tr>
<tr><td>C2 클래스</td><td>246</td><td>776</td><td>1,359</td><td>3,094</td><td>C2 클래스</td><td>213</td><td>672</td><td>1,177</td><td>2,681</td></tr>
<tr><td>A1 클래스</td><td>127</td><td>294</td><td>478</td><td>1,025</td><td>A1 클래스</td><td>127</td><td>294</td><td>478</td><td>1,024</td></tr>
<tr><td>14. 이익 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
나. 과세
(3)수익자에 대한 과세율</td><td colspan="5">※ 상기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/td><td colspan="5">※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,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,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</td></tr>
<tr><td>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1. 재무정보</td><td colspan="5">2010.4.23기준</td><td colspan="5">2011.09.15 기준</td></tr>
<tr><td>2.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</td><td colspan="5">2010.4.23기준</td><td colspan="5">2011.09.15 기준</td></tr>
<tr><td>3.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</td><td colspan="5">2010.4.23기준</td><td colspan="5">2011.09.15 기준</td></tr>
<tr><td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</td><td colspan="5">2010.4.23기준</td><td colspan="5">2011.09.15 기준</td></tr>
</table>

재무내용		
라. 운용자산 규모	2010.4.23기준	2011.09.15 기준
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.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.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	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.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.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